

여주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사무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여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1조,
「여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제18조 및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근거하여,
여주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사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여 주 시 장

1. 위탁시설 현황

시 설 명	내용 및 수량	
여주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사 업 명	여주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운영(민간위탁)
	위탁유형	시설형 민간위탁(재위탁, 공개모집)
	소 재 지	여주시 세종로14번길 18(창동), 중앙프라자 5층
	시설면적	전용면적 499㎡
	시설구성	사무실, 강의실 2, 회의실, 창업지원실 등
	임 대 료	사업장 임대료는 여주시 부담

2. 위탁사무 내용

마을공동체 분야	사회적경제 분야
• 주민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지원 및 컨설팅 • 마을공동체 전문인력 발굴·양성 • 마을공동체 기초조사·분석·평가·연구 • 마을공동체 민간단체 네트워크 사업 • 마을자원 조사 및 DB 구축 • 마을만들기 사업계획 수립 지원(각종 공모사업) • 마을공동체 고도화 사업 지원(수익사업) • 사회적경제 분야 진입 지원 • 그 밖에 마을공동체 추진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육성 • 사회적경제 조직의 창업 지원, 지원시설 관리·운영 • 사회적경제 조직 모델 및 정책 연구개발 • 사회적경제 조직 및 주민 교육·홍보 지원 • 사회적경제 민간 네트워크 간 협력 지원 • 사회적경제 조직 생산제품 구매 촉진 및 거래 활성화 지원 •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정보 제공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
공동: 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회계·예산·시설 및 재산 관리, 그 밖에 시장이 공동체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3. 위탁개요

- 위탁기간: 2027. 1. 1. ~ 2028. 12. 31.(2년)
 - ※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 및 「여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5년 이내에서 정하였으며, 기간 만료 시 성과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재계약(1회에 한함) 또는 재위탁 여부를 결정함
- 조직·인력: 5명(상근 센터장 1, 팀원 4), 2개 팀(마을공동체팀·사회적경제팀)
 - 센터 종사자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상근을 원칙으로 하며,
 - 2027. 1. 1.부터 팀장 직위를 두지 않음
 - 기존 종사자를 승계하는 경우의 직위 및 근로조건은 관계 법령과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 따라 협약 체결 전 市와 협의하여 정함

○ 종사자 자격 기준

구 분	자 격 기 준
공 통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사회적경제·공동체 활동 분야의 경험과 학식을 갖추어 실무 역량을 보유한 사람
센 터 장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사회적경제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서 사회적경제기업, 공동체 또는 사회적경제 관련 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일반 기업체에서 임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팀 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사회적경제 관련 학과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 사회적경제기업, 공동체 또는 사회적경제 관련 기관·단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 기업 또는 시민사회단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 위탁금액(2027년): 483,787천원

구 분	금액(천원)	내 용
인 건 비	243,187	종사자 5명(상근 센터장 1, 팀원 4) 인건비 및 4대 보험 사업주 부담분 등
운 영 비	76,600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일반관리비	10,000	수탁기관 관리부문 소요 비용(총액의 약 2.1%)
사 업 비	154,000	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 지원사업 추진(세부 사업은 신청기관 제안)
합 계	483,787	

※ 2027년 본예산 편성(안) 기준이며, 시의회 예산 의결 결과에 따라 확정되고

확정 금액에 따라 협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2028년 위탁금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별도 편성하며, 연도별 확정 예산에 따름

※ 부가가치세 관련 사항은 관계기관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 위탁조건

가. 운영 일반

-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이하 “기본조례”), 「여주시 민간위탁 관리지침」 및 위·수탁 협약서를 준수하고,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을 이행하여야 함(기본조례 제16조)
- 위탁사무는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도급 포함)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고, 협약상 권리·의무를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기본조례 제15조제3항, 「여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2조제4항)

○ 위탁받은 시설·장비와 위탁사업비는 위탁 목적 외(수탁기관이 소속된 법인·단체의 사업 등)로 사용할 수 없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하며, 훼손·분실 시 원상복구하여야 함. 시설을 증·개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기본조례 제16조, 「여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2조제4항)

○ 매년 사업계획서와 예산·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용자에게 대관료 등 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여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2조제2항, 기본조례 제22조)

○ 센터 종사자(센터장 포함)는 상근하여야 하며, 소정근로시간 중 법인 업무 등 위탁사무 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위반 시 목적 외로 사용한 위탁사업비는 환수함

○ 수탁사무 처리에 관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갖추어 두어야 함(기본조례 제23조)

○ 협약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과 개인정보를 협약 이행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누설해서는 아니 됨

나. 노동자 보호(「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2026. 9. 9. 시행)

○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기존 종사자의 고용을 유지·승계하여야 하며, (센터장 등 관리자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종사자의 근로계약 기간은 위탁기간과 같게 설정하여야 함

※ ‘특별한 사정’ 이란 사회통념상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객관성이 결여된 임의적 평가나 노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한 승계 거부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신청기관은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서식 제7호)를 제출하여야 하며, 선정된 기관은 이를 위·수탁 협약서에 첨부하여 이행하여야 함.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市는 10일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협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음

(기본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전 서면 통보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

○ 확약서를 이행하지 않은 수탁기관은 불이행 사업자로 관리하며, 市가 시행하는 수탁기관 모집에서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참가를 제한하거나 선정 심사 시 감점할 수 있음

○ 인건비(노무비)는 다른 비목과 구분하여 편성·관리하고 산출 내역을 종사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노무비 전용계좌로 지급하고 인건비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분기별로 임금지급명세서, 4대 사회보험료 납입증명서 등을 市에 제출하고, 市의 노동조건 이행 점검과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市와 수탁기관은 종사자 대표가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분기별로 운영하며, 수탁기관은 종사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독립된 사업주로서 인사·노무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다. 안전·청렴·보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협약 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서식 제5호)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서식 제6호)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 협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여주시를 피보험자로 하는 협약이행보증보험(보증금액: 수탁기관 세입·세출 예산의 100분의 10 이상)에 가입(또는 협약보증금 납부)하고 보험증권 원본(또는 납부 증빙)을 제출하여야 하며(협약 이행보증 의무: 「여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2조제5항), 화재보험·손해배상책임보험 등 협약서에서 정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보험료는 수탁기관 부담)

라. 회계·관리체계

○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외부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고 그 감사보고서를 市에 제출하여야 함

○ 위탁사업비 계좌와 예수금(원천징수·4대 사회보험·퇴직급여 적립 등)계좌를 수탁기관 명의로 각각 개설하여 법인 고유 계좌와 물리적으로 분리·구분 관리하여야 함

○ 市·센터 협업사업은 사전 역할 분담과 예산 이중 승인 구조를 명시하고, 市 주관 사업과의 중복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협의·승인 절차를 거쳐야 함

○ 지도·점검 지적 사항에 대한 시정·이행 결과를 분기별로 市에 정기 보고하여야 함

○ 마을공동체 사업의 발굴·컨설팅 시 부지 확보와 시설의 지속적 활용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 시설의 대체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마. 지도·감독, 성과평가 및 해지

○ 市의 지도·점검과 매년 1회 이상의 감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위탁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市는 시정조치 또는 위탁사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이 경우 기간을 정하여 사전에 문서로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함(기본조례 제18조)

○ 市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재계약·재위탁 심사 등에 활용함(기본조례 제20조·제21조)

○ 市는 기본조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함

○ 위탁기간이 끝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시설·장비·비품, 수탁 관련 서류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 일체를 市에 반환·이관하여야 함(기본조례 제19조제3항, 「여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2조제3항, 「여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제20조제3항)

○ 그 밖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수탁 협약서에서 정함

5.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여주시 또는 경기도 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사회적경제 또는 공동체 활동 분야의 전문적인 인적·기술적 역량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 ① 정관상 목적 또는 주된 사업에 ‘사회적경제’ 또는 ‘공동체 활동’ 관련 내용이 포함된 「민법」 제3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②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③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학 산학협력단 등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위·수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정관에 명시된 경우에 한함)

※ 최근 3년 이내 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중간지원조직 운영 등 유사 분야 포함) 사업 수행 실적은 신청 자격이 아니라 정량평가 ‘수행경험(실적)’ 항목에서 평가함

6. 신청제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은 신청할 수 없으며,

선정 후에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거나 협약을 해지함

가. 최근 3년간 여주시 위탁사무 수행 시 법인 또는 시설 종사자가

민간위탁금 횡령, 인권침해, 성희롱·성폭력, 부당노동행위 등 주요 비위로
행정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나. 최근 5년간 법인(단체)의 대표자·임원 또는 이 위탁사무 참여 예정자(내정자)가
회계 부정, 성희롱, 폭언 등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지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다. 최근 10년 이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수행 중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위탁이 해지된 경우

라.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관련 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또는 위탁 해지
처분을 받은 경우

마.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가 없거나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경우

바. 정치·종교 활동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

사. 법인(단체) 및 산하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보조금 횡령,

법인 명의 대여·차용, 인권침해 등 공신력·도덕성과 관련된 중대한 지적을 받고
시정조치를 완료하지 않았거나 관련 민·형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아. 공고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어 공고일 현재 그 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市는 수탁기관의 공신력 확인을 위하여 결격사유를 조회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함

7.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2026. 10. 15.(목) ~ 2026. 10. 30.(금) 18:00 [16일간]

※ 여주시청 홈페이지(www.yeouju.go.kr) 고시·공고 게시물에서 공고문 및 서식 내려받기

○ 접수기간: 2026. 10. 28.(수) ~ 2026. 10. 30.(금), 09:00 ~ 18:00 [3일간]

○ 접수장소: 여주시청 별관(영무빌딩) 3층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공동체팀

- 주 소: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0

○ 접수방법: 방문 접수만 가능 (우편·택배·인터넷·전자우편 접수 불가)

- 대표자 또는 위임장(서식 제3호)을 지참한 소속 직원이 직접 제출(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지참)

- 제출한 서류는 변경하거나 보완할 수 없음

○ 문 의 처: 여주시청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공동체팀 ☎ 031-887-2031

8.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부수 및 형태
신청서류	- 수탁신청서(서식 제1호) - 사용인감제(서식 제2호) 및 법인 인감증명서 - 위임장(서식 제3호):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 서약서(서식 제4호), 청렴이행서약서(서식 제5호)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서식 제6호) -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서식 제7호): 필수, 미제출 시 심사 제외 - 감점항목 해당 여부 확인서(서식 제8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 제12호): 대표자 및 센터 투입 예정 인력(센터장 예정자 포함) 각 1부	원본 1부 사본 11부 (신청 서류부터 사업계획서까지 1권으로 편철)
법인(단체) 증빙서류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 법인 설립 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정량평가 증빙서류	- 정량평가 기재서(서식 제9호) - 이행실적증명서(서식 제10호): 발급이 곤란한 경우 계약(협약)서 사본 및 선정 결과 자료 등 - 최근 3년간 결산서(재무제표) - 대표자 및 센터 투입 예정 인력의 이력서, 경력·자격 증빙서류 - 기술 인력 산정 대상자의 재직증명서 및 4대 사회보험 가입 증명서 - 안전관리 증빙: 안전 인력·안전 예산 현황,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재해 대응체계, 최근 3년간 안전교육·훈련 실적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서식 제11호 목차에 따라 작성)	
감점 확인 자료	최근 3년간 수행한 지방자치단체 위탁사무 관련 지도점검 지적 사항, 성과평가 결과서, 회계감사 결과(해당 기관)	사본 1부 배포본 11부
발표자료	기관 소개 및 사업계획(발표 15분 분량),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같은 내용	평가본 11부
전자파일	제출 서류 일체의 원본 파일(HWPX·PPT 등) 및 PDF 변환본	USB 1개

○ 작성 및 제출 요령

- A4 규격으로 제출 서류 순서에 따라 좌측 편철(스프링 제본)하고, 표지·목차를 넣어 매 쪽 하단에 쪽 번호를 표기하며, 200쪽 이내로 양면 인쇄함
- 원본에는 신청기관 직인을 날인함
-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사용하되 기재란이 부족하면 별지로 작성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는 서식 제11호의 목차를 모두 포함하는 범위에서 재구성할 수 있음
- 별도 기준일을 정하지 않은 항목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을 제출함
-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표기하고 법인 인감을 날인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개인정보는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함
- 정량평가는 제출된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사항만 인정하며, 입증하지 못한 사항은 인정하지 않음
- 감점 확인 자료 배포본과 발표 자료 평가본에는 기관명·로고·대표자명 등 신청기관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넣지 않음(포함된 경우 市가 가린 후 배포할 수 있음)

9. 수탁기관 선정절차

- 심사: 민간위탁심의위원회, **2026. 11. 9.(월) 예정 (장소·시간은 신청기관에 개별 통지)**
- 심사기준: 정량평가 30점 (사업 부서 사전평가) + 정성평가 70점 (민간위탁심의위원회 평가)
 - 감점 (정량 최대 4점, 정성 최대 3점)
 - 정량평가 결과와 정량 감점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 기본조례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함께 종합적으로 심사함
- ※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은 붙임 1 「수탁기관 선정 심사 기준 및 배점표」 참조
- 선정방법
 -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점수를 합산하고 감점을 반영한 종합 점수가 70점 이상인 신청기관 중 최고 득점 기관을 선정함
 - 정성평가 점수는 위원별 합계 점수 중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산정하며 (최고·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이면 하나씩만 제외),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종합 점수가 같으면 정성평가 ‘지역사회 기여도 및 지속가능성’ 항목 점수가 높은 기관,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기관 순으로 선정하고, 그래도 같으면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의결로 정함

- 유효한 신청기관이 1개소 이하이면 1회 재공고하며, 재공고 후에도 1개소이면 같은 기준으로 심사하여 종합 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선정함.

70점 이상인 기관이 없으면 재공고함

-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서식 제7호)를 제출하지 않은 신청기관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 발표심사

- 질의에 응답하여야 하며, 불참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발표는 대표자 또는 센터장 예정자가 하며, 발표자를 포함하여 2명 이내로 참석함
- 발표 순서는 접수 순서에 따르며, 다른 신청기관의 발표는 참관할 수 없음

10. 선정결과 통지, 이의신청 및 협약 체결

○ **결과 통지: 2026. 11. 10.(화) 예정, 市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기관 개별 통지**
(미선정 기관에는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선정 결과 공고 시 이의신청 방법을 함께 안내함)

○ 이의신청: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신청기관은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서식 제13호)를 시장에게 문서로 제출할 수 있음 (기본조례 제13조)

- 市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문서로 통지하며, 위원회 심의를 거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하고 그 사유를 통지함

- 이의신청 대상은 신청자격, 공고 내용, 정량평가 관련 사항으로 하며, 같은 사안에 대하여 반복하여 이의신청할 수 없음 (「여주시 민간위탁 관리지침」)

○ **협약 체결: 2026년 12월 초순 예정(이의신청 기간이 끝나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그 처리가 끝난 후 체결하며 세부 일정은 별도 통보)**

- 선정된 기관이 지정 기일까지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협약이 성립되지 않으면 선정을 무효로 하고, 종합점수 70점 이상인 차순위 득점 기관 순으로 협약을 추진할 수 있음

- 위·수탁 협약서는 필요한 경우 여주시 소속 변호사 등의 자문을 거쳐 확정함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4조)

- 협약을 체결하면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사무명, 위탁기간 등을 市 홈페이지에 공개함(기본조례 제14조제2항)

11. 기타 유의사항

- 공고문 및 작성 요령을 숙지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신청기관이 책임지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공모 참여에 드는 비용은 신청기관이 부담함
- 市는 제출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나 소명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지 확인을 할 수 있음
- **제출 서류가 거짓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 후 확인되면 선정을 취소하거나 협약을 해지함**
(기본조례 제19조제1항제1호)
- 심사위원 명단, 위원별 평가 내용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않음
- 센터장 예정자 등 참여 인력이 이 공고의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市는 협약 체결 전까지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인력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채용·배치 등 인사·노무관리는 수탁기관이 독립적으로 수행함
- 제출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 공모의 심사·선정 및 협약 체결 목적으로만 이용함
-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본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여주시 민간위탁 관리지침」,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등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름
- 이 공고의 내용은 市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하는 경우 市 홈페이지에 공고함